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450호

「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490호, 2020.07.0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2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

#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운수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한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할 때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으나, 국토교통부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하여 제출의무를 삭제하고,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확대됨에 따라 검사관의 인력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관 자격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업계획서(안 제15조)

: 법인등기부 등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하여 제출의무 삭제

- 나. 검사요원의 구분·자격 및 직무(안 별표6)
  - : 검사관 자격 기준을 학사학위 이상에서 고졸학력 이상으로 완화

#### 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버스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의견과 그 사유)
  - 나. 성명(기관, 단체의 경우 그 기관, 단체명과 부서명, 직급명), 주소, 전화번호
  - 다. 기타 참고사항
  - 라. 보내실 곳
    - 주소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 622호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
    -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: 044-201-3824, 3825(팩스 044-201-5582)

## 4. 기타

○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 go.kr) 정책자료→ 법령정보 → 입법·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